

예 산 총 칙

202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 ·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52,209,489	28,566,285
일반회계	866,833,076	26,004,992
특별회계	85,376,413	2,561,292
공기업특별회계	46,939,129	1,408,17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6,939,129	1,408,174
기타특별회계	38,437,284	1,153,11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82,671	20,480
자활기금특별회계	478,943	14,368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3,863,852	115,91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29,900	6,897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2,740,710	82,221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58,376	7,751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447,597	13,428
수질개선톤별회계	29,735,235	892,057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000,000천원으로 하고, 재해 · 재난목적예비비는 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3,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